

# 3 녹색건축 인증(G-SEED)과 다른 유사 제도와의 상관성 분석

글 박철용 \ 건축기술팀 차장 \ 전화 02-3433-7731 \ E-mail cypark@ssyenc.com

## 1. 머리말

본 고에서는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의 평가항목들과 관계있는 법령 또는 기준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차별성 또는 중복성을 확인해 봄으로써 녹색건축 인증제도(G-SEED)의 개선방향과 더불어 유사 제도와의 통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녹색건축 인증(G-SEED) 개요

녹색건축 인증(G-SEED)은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과 더불어 기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통합하여 새롭게 마련된 제도이다.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주택성능항목과 혁신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택성능항목을 제외한 평가항목에 대한 획득 배점 비율에 분류별 가중치를 곱한 후 혁신항목 획득 배점을 더한 총점을 구하여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3. 전문분야별 평가항목 분석

### 3-1. 토지이용 및 교통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대중교통의 근접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1]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이 아닌 세대수 기준으로 수정 반영되어 있다.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대책	건축법 시행령
보행자 전용도로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 주차장 및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

### 3-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저에너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이용하고 있다.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신재생에너지 이용’,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에너지 모니터링 외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	-
오존층 보호 조치	-

### 3-3. 재료 및 자원

‘환경성 선언 제품(EPD)의 사용’, ‘저탄소 자재의 사용’,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로는 환경성적표지와 탄소성적표지, 환경마크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등이 있지만 의무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보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표 3 재료 및 자원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환경성 선언 제품(EPD)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환경마크 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저탄소 자재	
자원순환 자재	
유해물질 저감 자재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재활용 가능 자원의 보관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물순환관리

‘빗물관리’,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각 지자체 조례로 규제되고 있다. ‘절수형 기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로는 환경마크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 사용량 모니터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물순환관리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빗물관리	각 지자체 조례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절수형 기기	환경마크 인증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3-5. 유지관리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운영,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은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 매뉴얼 제공’, ‘녹색건축 인증 관련 정보 제공’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유지관리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운영, 유지관리 문서	건축법
사용자 매뉴얼	-
녹색건축 인증 정보 제공	-

### 3-6. 생태환경

‘연계된 녹지축 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률’, ‘비오톱 조성’은 생태면적을 적용 지침(환경부, 2016)과 각 지자체별 조경 관리 조례를 따른다.

표 6 생태환경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을 적용 지침
생태면적률	
비오톱 조성	

### 3-7. 실내환경

‘실내 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적용’은 환경마크 인증, HB마크 인증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자연환기성능 확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

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설계조건) 제2항에 의무사항으로 반영되어 있다. '경량충격을 차단 성능', '중량충격을 차단성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및 제60조의3(바닥충격을 성능등급 및 기준 등)을 기본으로 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을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은 구조형식별 두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 등)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성능기준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의 소음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급배수시설)에서 감압밸브 설치와 저소음형 배관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7 실내환경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환경마크 인증 HB 마크 인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연환기성능	-
단위세대 환기성능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동온도조절장치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바닥충격을 차단구조 인정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소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교통소음 실내의 소음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화장실 급배수 소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8. 주택성능분야

'내구성'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에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 '가변성'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에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 배려',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에서는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 수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55조2(주민공동시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세대 내 일조확보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 건물 인증과는 유사한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방범안전콘텐츠'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감지 및 경보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내화성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또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평피난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피난설비'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수리용이성, 전용부분'과 '수리용이성, 공용부분'은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평가기준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주택성능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내구성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가변성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단위세대 사회적 약자 배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 법률 BF 인증
공용공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 센터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 내 일조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방범안전콘텐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준
감지 및 경보 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연설비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화재안전기준(NFSC 501) 화재안전기준(NFSC 501A)
내화성능	-
수평피난거리	건축법 시행령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
피난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30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장수명 주택 인증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9. 혁신적인 설계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외피 열교 방지’, ‘건축물 전과정평가 수행’,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재사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녹색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은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표토 재활용 비율’과 추가적으로 ‘녹색건축전문가 설계 참여’,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및 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혁신적인 설계 분야 분석 결과

G-SEED 평가항목	관련 법령 및 제도
대안적 교통 관련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형 자동차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로에너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외피 열교 방지	-
건축물 전과정평가	-
기존 주요 구조부 재사용	-
중수도 설치	물의 재이용 법률
녹색건설현장 환경관리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표토 재활용 비율	-
녹색건축전문가 참여	-
혁신적인 녹색건축 설계	-

## 4. 최소기준으로서의 필수항목 분석

현재 필수 인증항목은 다음 <표 10>과 같이 ‘1. 토지이용 및 교통’을 제외하고 전문분야별 1개씩 총 6개 항목이다.

표 10 필수 인증항목 - 현재

전문분야	필수 인증항목
1. 토지이용 및 교통	-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 성능
3. 재료 및 자원	3.6 재활용 가능자원 보관시설
4. 물순환관리	4.3 절수형 기기
5. 유지관리	5.2 유지관리 매뉴얼
6. 생태환경	6.3 생태면적률
7. 실내환경	7.1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평가항목별 기본이 되는 법령 및 제도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는 항목이 되므로 평가기준이 법령 및 제도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할 경우 필수항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필수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이 이러한 법령 및 제도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재실자 등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경우 이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 고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전문분야별 필수 인증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필수 인증항목 - 법규 기반

전문분야	필수 인증항목
1. 토지이용 및 교통	일조권 간섭방지대책 자전거 주차장 및 도로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성능
3. 재료 및 자원	재활용 가능 자원의 보관시설
4. 물순환관리	빗물관리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
5. 유지관리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계획 운영, 유지관리 문서
6. 생태환경	생태면적률
7. 실내환경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단위세대 환기성능 자동 온도조절 장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소음 교통소음 실내외 소음도 화장실 급배수 소음

이상과 같이 최소기준으로서의 필수항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1. 토지이용 및 교통’ 분야에서는 ‘일조권 간섭방지대책’과 ‘자전거 주차장 및 도로’ 이상 2개 평가항목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수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평가기준이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와 ‘3. 재료 및 자원’ 분야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필수 인증항목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물순환관리’ 분야의 경우 현재 ‘절수형 기기’가 필수 인증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빗물관리’ 및 ‘빗물 및 유출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수 인증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사

항이므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다면 필수 인증항목의 전환이 적절하지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필수 인증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절수형 기기'의 경우 물절약을 위한 행위를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 유지관리' 분야의 경우 현재 '유지관리 매뉴얼'만을 필수 인증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건설현장의 환경관리계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수 인증항목의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6. 생태환경' 분야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필수 인증항목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실내환경' 분야는 상위법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있는 경우이며, 따라서 많은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필수 인증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를 포함하여 '단위세대 환기성능', '자동 온도조절 장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세대간 경계소음', '교통소음 실내외 소음도' 그리고 '화장실 급배수 소음' 이상 8개 평가항목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수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모든 평가항목이 1,000세대 이상에만 해당하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에서는 필수 표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녹색건축 인증에서 필수항목으로 규정할 경우 세대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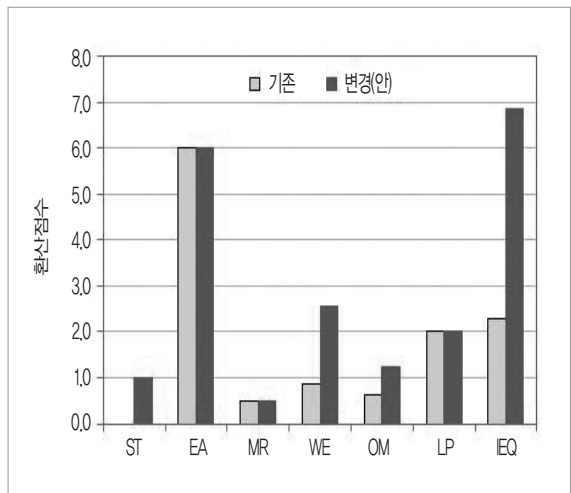
다시 한번 검토의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만, 본 고에서는 현재 필수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평가항목이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재실자 등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고려는 하지 않았다.

## 5. 배점 시뮬레이션 분석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반영하여 본 고에서 제안한 것처럼 필수항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경우 (1)필수항목만의 배점 변화, (2)일반등급으로 인증받은 사례 중 필수항목 변화에 따른 배점의 변화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 1) 필수항목만의 배점 변화

기본적으로 필수항목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필수항목만을 준수 하더라도 환산배점은 [그림 2]와 같이 총점 12.25점에서 총점 20.15점으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필수항목 변화에 따른 배점 변화 비교

### 2) 일반등급 인증 사례의 배점 변화

다음으로 실제 인증을 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필수항목의 변화에 따른 배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 때 등급이 낮을수록 배점을 받은 항목의 개수가 적으므로 필수항목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등급을 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건물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242세대 소규모 아파트 단지이며, 최고 15층 규모의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대상 건물의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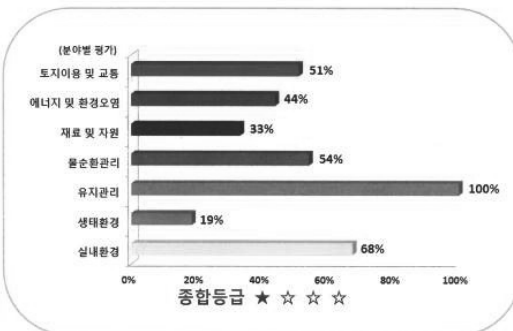
대상 건물의 전체 인증 현황은 [그림 4]와 같으며,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이 아닌 앞에서 살펴본 필수 인증항목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달라지는 배점만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와 같이 1개 대상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다소 역측일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인증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상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건축주 준공(예정)일 주소 층수 연면적 건축물의주된 용도 설계자	인증번호: 2017-140 인증기관: 한국감정원 유효기간:  <b>인증 등급</b> 인증등급: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7년 06월 16일

## 한국감정원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 4]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표 12 필수 인증항목 변화에 따른 배점 변화

전문분야	필수 인증항목	획득여부
ST	R.일조권 간섭방지대책 R.자전거 주차장 및 도로	× ○
EA	C.에너지 성능	○
MR	C.재활용 가능 자원의 보관시설	○
WE	R.빛관리 R.빛물 및 유출 지해수 이용 C.절수형 기기	× ○ ○
OM	R.건설현장의 환경관리계획 C.운영, 유지관리 문서	○ ○
LP	C.생태면적률	○
IEQ	C.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R.단위세대 환기성능 R.자동 온도조절 장치 R.경량충격을 차단성능 R.중량충격을 차단성능 R.세대간 경계소음 R.교통소음 실내외 소음도 R.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 ○ ○ ○ ○

위법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배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배점을 획득할 항목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배점을 획득할 수 있는 최소기준이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6.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이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전문분야별 필수항목을 선정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 및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필수항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 및 교통', '물순환관리', '유지관리'와 '실내환경' 분야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실내환경' 분야는 기존 1개에서 최대 8개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위법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건축 인증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건축 인증 기준이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에 걸쳐 건축물의 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과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환경 친화 정도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령 및 기준의 분석을 통하여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등급 구분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각 국가의 인증제도에 대한 면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실정만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아닌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S**

### 참고문헌

- ①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 G-SEED 2016 v1.2
- ②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